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1차 공모(안)

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해진 문화예술계 창작여건을 개선하고, 하반기 발표 편중 현상 발생 우려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발표공간에서 진행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대관료를 지원하고자 함

사 업 명	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사업		
사업내용	공공 및 민간 공연장, 전시장 등에서 진행한 예술창작 발표활동 대관료 보전 지원 ※ 순수대관료(준비대관, 공연대관, 철수대관)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. (연습공간사용료는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) ※ 민간 운영공간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발표진행이 가능한 공간인 경우 지원 가능 ※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주체(예술단체, 예술인) 명의로 지원 신청해야 함.		
지원대상	2020년 도내 공공·민간시설에서 공연·전시 등 예술창작 발표 활동을 진행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 ※ 1개 예술단체(예술인)당 최대 5건 이내 지원(1차, 2차 포함) 단,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, 지원결정 후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※ 재단, 국비, 지방비 지원사업 또는 자체 공간사업 지원제한(중복지원불가) ※ 마을단위, 비예술인(단체)의 초청 등 행사성 사업 지원불가		
지원자격	구분	신청자격	자격요건
	개인	제주도 내 주민등록 소재 예술인	최근 3년간(2017년~현재) 1회 이상 문화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, 예술인 또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예술인
	단체	제주도 내 소재 예술단체	
지원내용 및 지원규모	구분	1차 공모	2차 공모
	지원대상	1월20일~8월까지 완료한 행사	9월~11월30일까지 완료한 행사
	지원규모	건당 최대 700천원	좌동
	지원건수	70건 내외	좌동
※ 2차공모: 2020.11월 예정			
지원금 보전범위	대관장소	공공시설, 임대사업자	임대사업자 없는 민간시설
	지급방법	(세금)계산서를 근거로 한 70만원 범위 내 대관료 실비 예술단체(예술인)에게 지원	원천징수 후 70만원 범위 내 대관료 실비 예술단체(예술인)에게 지원

유의사항	•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됨 • 첨부파일(URL링크, 영상, 음원파일 등)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• 필수·선택 제출 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를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(지정양식 준수 필수/ 총 용량은 100MB 까지 첨부 가능) •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의 '내정보방' - '내회원정보'도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
문의	• 시스템 관련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상담센터 (1577-8751) • 지원사업 관련 :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(064-800-9132)

[지원신청시 유의사항]

-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포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 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동의서 필수 제출
-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,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,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- 활동 경력증빙 상의 개인·단체가 지원신청 개인·단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 불인정

[지원신청자격 · 부적격자 · 부적격사업 · 지원신청 예산편성 안내]

지원신청 부적격자, 부적격사업에 해당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하고
'0' 점 처리하며, 지원 결정 후 발견된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1. 지원신청 부적격자

(1) 지원신청 개인(단체) 부적격 기준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-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
-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정부·지자체 및 산하 국립·공립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
-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·친교 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
(2)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

- 관계 법령 및 「보조금 운영관리규정」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·단체
-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 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·단체
- 신청 접수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최종 정산보고서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·단체 또는 전년도 정산보고서 제출기한(60일)을 초과한 개인·단체
-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개인·단체
- ※ 단,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,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

(3) 관련 규정,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- ※ 단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성희롱,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(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2019.12.20.개정)
-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에 따른 '불공정행위의 금지'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

시정조치를 받은 개인·단체

-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·단체
-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·단체

2.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

(1)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
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-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
- 졸업작품 및 학위청구 관련 발표 사업
-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, 경연대회, 공모사업(시상금, 상금 심사비, 상품(권) 지급 불가)
- 참가비(출품료)를 받는 사업
- 지원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
-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
-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
- 사업 수행 인원 중 50%이상이 초·중·고·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

(2) 예산 부적격 기준

-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
-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시, 서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원 사업

※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

3. 심의배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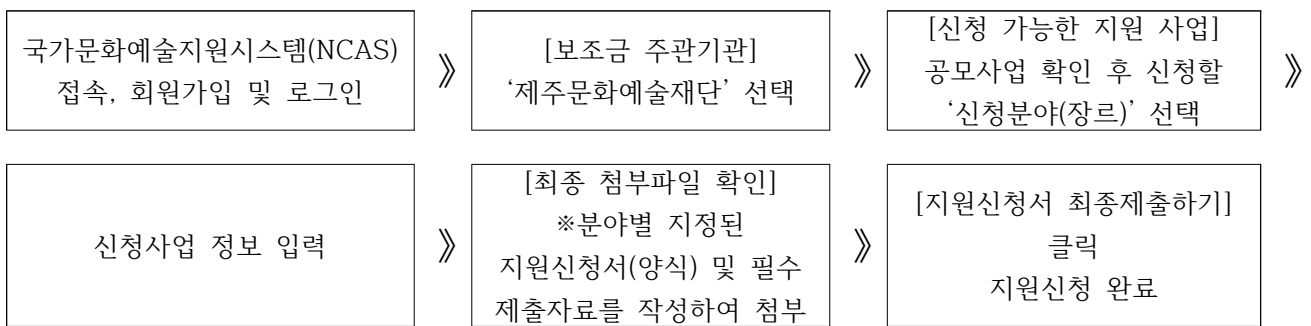
- (1)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
- (2) 신청제한사항(부적격자, 부적격 사업)에 해당하는 경우
- (3) 지원금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
- (4)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 (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)
- (5) 지원신청서의 주최,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, 기재되지 않은 경우

심의배제사항에 해당되거나 감점이 적용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[지원시스템 사용안내]

1. 지원신청방법

- (1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<https://www.ncas.or.kr>)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이외의 전자 우편,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.
 -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(신청 접수 시 심의 배제)
 - 단체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'단체 대표자(개인)' 회원가입 후 '단체'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
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의 '내정보방'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.(개인·단체의 명칭, 대표자명, 주소, 경력사항 등)



2. 시스템 사용시 유의사항

- (1) 지원 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) 과 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(2) 지원시스템에 신청사업 정보 입력시 타 사업에 지원, 지원신청서 미제출, 필수자료 미제출,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(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)은 심의 배제처리 됩니다.
- ※ 단, 제출된 첨부파일 내 이미지 등이 손상된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요청 할 수 있음 (요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제출 한)
- (3) 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7:59 이전까지는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,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위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
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.**